

# 검 토 보 고

- I.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 II.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I.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764호
- 나. 제 출 자 : 남창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2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0월 27일

## 2. 제안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

부를 정비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 II.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791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 다.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4일

### 2.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도·소매업자 또는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또는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정 절차

(안 제6조, 제6조의2)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임기 등의 위원회 구성 (안 제7조)

다. 위원장의 역할, 회의소집, 개의와 의결,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운영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제안배경

-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

###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규정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1)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시인 서울시가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2)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1)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협의회의 논의 안건이 제한적이고, '10년 1월 협의회 구성 이후 개최횟수가 총 5회에 불과하며 특히 14년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현재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활동이 중단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요>

- 구성일 : '10.01.07.
- 구성목적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 논의
- 위 원 : 13명(경제진흥본부장 외 위촉직 12명)
- 주요안건 :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 조정,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영업시간 및 품목에 관한 사항 등
- 개최실적 : 5회('11. 2회, '12. 1회, '13. 2회)

####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3)에 따르면 특별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그에 대한 운영 근거가 없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유통에 관련된 분쟁발

3)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 시에 분쟁 조정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로, 기존에 있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중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만을 논의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 및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다만, 그 동안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상정한 분쟁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예상됨.

#### 라. 분쟁조정 신청절차 (안 제6조의2 신설)

- 소상공인이 유통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자치구 유통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서울시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치구에서 조정된 분쟁 중 조정신청인이 불복한 조정안에 대해서만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sup>4)</sup>되며, 위

---

4) 자치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정안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 강제적인 효력이 없어 위원회의 조정안이 유명무실한 안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방의회의 의원은 위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 시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위원의 선정과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어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위원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서 일정 부분을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5)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촉직위원의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므로 해당 비율을 명시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제척·기피·회피<sup>6)</sup> 대상 안전심의참여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위원회의 심의의 투명성 및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의2제1호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5)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의 조항을 차용함.

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공동권리자가 되는 경우와 제2호에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배제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음.

## 바. 기타 조문의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정비취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사. 종합의견

- 최근 대형유통업체(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하여 지역상권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각종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유통분쟁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분쟁의 발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협의회 개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닌 실효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문 대비표〉

현 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대형유통기업</u>”이란 「<u>유통산업발전법</u>」 별 표에 따른 <u>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u>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u>소상공인</u>”이란 유통산업을 <u>영위하는 자</u>로서 「<u>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소상공인</u>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6 (생 략)</p> <p>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p> <p>①~② (생 략)</p> <p>1.~8. (생 략)</p> <p>③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u>서울특별시의회</u>(이하 “<u>시의회</u>”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p> <p>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p>	<p>제2조(정의)-----</p> <p>-----.</p> <p>1~2. (현행과 같음)</p> <p>3</p> <p>-----</p> <p>-- <u>영위하는 사람으로</u> <u>선</u>-----</p> <p>-----</p> <p>-----.</p> <p>4~6 (현행과 같음)</p> <p>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p> <p>①~② (현행과 같음)</p> <p>1.~8. (현행과 같음)</p> <p>③ ----- 수 립한 <u>경우에는</u></p> <p>-----</p> <p>-----</p> <p>-----.</p> <p>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p> <p>(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p> <p>-----.</p> <p>1. “<u>대형유통기업</u>”이란 「<u>유통산업발전법</u>」 별 표에 따른 <u>대규모점포</u>를 말한다.</p> <p>2~6 (현행과 같음)</p> <p>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현행과 같음)</p> <p>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p> <p>① -----</p> <p>-----</p> <p>-----</p>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u></p> <p>7. ~ 9. (생략)</p> <p>②·③ (생략)</p> <p><b>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b>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1.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3. 대형유통기업 등의 적정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에 관한 사항</p> <p>4.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p> <p>5.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p>	<p><b>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b>(현행과 같음)</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u></p> <p>7. ~ 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b> 시장은 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p> <p>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p> <p>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p>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6.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p> <p>7.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p> <p>8.유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p> <p>나.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p> <p>다.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p>		<p><u>한 분쟁</u></p>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u>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u></p> <p><u>라.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u></p> <p><u>9. 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②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개설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시장에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u>&lt;삭제&gt;</u></p> <p><u>제6조의2(분쟁의 조정)</u></p> <p><u>①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자치구 위원회 및</u></p>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제7조(협회의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유통업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회 의원</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li> <li>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형유통기업 등의 대표</li> </ol>	<p>제7조(협회의의 구성)(현행과 같음)</p>	<p>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자치구 위원회에 조정·심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li> <li>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li> </ol> </li> </ol>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제8조(협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u>협회의</u>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u>협회의</u>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u>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협회의</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u>협회의</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u></p> <p>4. <u>기타</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5. (생략)</p> <p>⑤ <u>협회의</u>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협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이 협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한 조치가 필요한</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 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5. (현행과 같음)</p> <p>⑤~⑥(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의 운영) ① ----- <u>위원회</u> -----.</p> <p>② 위원장이 <u>위원회</u>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위원회</u>----- ----- -----.</p> <p>④ <u>위원회</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u></p> <p>4.~ 5.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u> ----- ----- ----- ----- -----.</p>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5.기타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p> <p>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p><b>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b>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li> <li>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li> </ol>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상권영향 조사</p>	<p>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상권영향 조사</p>	<p>4. <u>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p> <p>5. <u>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u></p> <p>6. <u>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7.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현행과 같음)</p> <p>제10조(상권영향 조사</p>

현행	의원발의안	시장제출안
<p>등) ① 시장은 <u>협회의</u> 요청이 있거나 <u>상생협력계획</u>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b>제13조(비밀의 유지)</b> <u>협회의</u>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p> <p><b>제14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등)(현행과 같음)</p> <p><b>제13조(비밀의 유지)</b> (현행과 같음)</p> <p><b>제14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등) ① 시장은 <u>상생협력계획</u>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는 ----- -----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3조(비밀의 유지)</b> <u>위원회의</u> 위원 및 상권영향조사에 참여한 자는 ----- -----.</p> <p><b>제14조(시행규칙)</b>(현행과 같음)</p>